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검토보고서

【차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2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

#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경 과

의안 제308호로 2024년 2월 8일 차인영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신설
- 나.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신설
- 다.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 신설
- 라.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 신설
- 마. 기타 법제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2. 9.~ 2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5조에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、녹색 성장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.
- 안 제16조에서는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17조는 법 제2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.
- 안 제23조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 체계1)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36조제3항에서 구청장에게 부여한 의무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신설함.

<sup>1)</sup>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·흡수량, 배출·흡수 계수(係數)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·분석 ·검증·작성하고 관리하는 체계

##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을 통해 신설되는 "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"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,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써 법 제24조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게 실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 10개의 2)자치구에서는 해당 예산제도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, 안 제17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에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'22년 '3)탄소중립 그린도시', '23년 '4)탄소 중립도시(Net-Zero City)' 공모 등을 통해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음. 현재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가적인 공모 계획이 없음에 따라 우리 구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'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'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-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름에는 극심한 폭우 및 폭염, 겨울에는 잦은 폭설 등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겪고 있음.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의무로 부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,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

<sup>2) 2)</sup> 서대문구, 구로구, 금천구, 강북구, 중랑구, 동작구, 노원구, 강동구, 종로구, 은평구

<sup>3)</sup> 환경기술·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, 흡수원 확충,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·구현하는 도시로 수원시, 충주시가 선정되었음.

<sup>4)</sup> 온실가스 감축 + 흡수원 확대로 '실질 탄소 배출량을 0 (Net-Zero)'으로 만드는 도시로, 10개소 조성 예정('30년)

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히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참고 자료

###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
제24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)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, 공 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-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1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 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개선 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·세제·경영·기술 지원, 실태조사 및 진단, 자료·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,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·기술 지원,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.
  - 제29조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(이하 "탄소중립도시"라 한다)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
- 2.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·확충 및 개선하는 사 업
- 3.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
- 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

- 5.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,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 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이행점검,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,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·시행,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제36조(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)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 가스 배출량・흡수량, 배출・흡수 계수(係數)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・분석・검증・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・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종합정보센터"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·산업공정·농업·폐기물·해양수산·산림 등 부문별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·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